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

안건번호 제2023 - 34(서) - 158호

안 건 명 민원신고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3. 9. 26.

## 주 문

1. 피심인은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2. 피심인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(휴업일 제외)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(42cm×59.4cm)로 하여야 한다.
3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금 액 : 36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1. 사실조사 현황

### 가. 조사배경

1.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(이하 '과다 지원금')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'단말기유통법')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('23.3.13.~'23.6.30.)를 실시하였다.

### 나. 행위 사실

2. 국민신문고('22년 1월 이후)에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피심인이 다음과 같이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2.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

### 가. 처분 규정

3.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4.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·제5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,

5. 또한,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**<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>**

<p><b>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</b></p> <p>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4조(시정명령)</b></p> <p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,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5조제1항, 제7조제2항·제3항, 제8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9조제2항·제3항·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(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, 대리점,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4. 위반행위의 중지</p> <p>5.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</p> <p><b>제22조(과태료)</b>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, 판매점,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3.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</p>
--

**나. 위법성 판단**

6. 피심인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(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)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.

**3. 시정조치 명령**

**가. 위반행위의 중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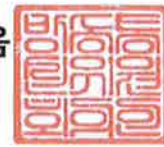
7.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#### 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8. 피심인은 가.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(휴업일 제외) 공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(42cm×59.4cm)로 하여야 한다.

#### < 공표문안 >

○○○(유통점명)은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 위반을 이유로  
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



○○○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
2023년 0월 0일

○○○(유통점명) 대표자 ○○○

#### 4. 과태료 부과

9.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[별표 3]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10.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[별표 3]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 번째에 해당하여 2차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.

**< 과태료 개별기준 >**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구분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라.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제3호	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	300	600	1,000
		대규모유통업자	1,500	3,000	5,000

**나. 추가적 가중 및 감경**

11.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[별표 3]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다 지원금 지급수준이 평균 10만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, 개별기준 금액의 50%를 가중한다.
12. 다만, 사실조사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, 과태료 개별기준 금액의 30%를 감경한다.

**다. 최종 과태료**

13. 이에 따라, 피심인에게 기준금액 30,000,000원에 50%를 가중한 금액(+15,000,000원) 및 30%를 감경한 금액(-9,000,000원)을 합산하여 36,0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5. 결론**

14.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(시정명령) 및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15.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16.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17.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9월 26일

위원장 이 동 관



부위원장 이 상 인

